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. 4. 22 선고 2021가합40590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4. 22.

주 문

1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9. 17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3. 일부 기각

원고는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,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,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(대법원 2002. 3. 26. 선고 2001다72968 판결 참조), 앞서 인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.

재판장 판사 최진숙, 판사 권가희, 판사 김형준

별지